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조상품 판매 모니터링 등 의무 부여〉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07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상표권 등 침해행위 모니터링 등 의무 부여	3
2. 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 강화	8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27.
- (3) 회 부 일 : 2024.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두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여간 4만여건의 가품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가품 판매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상표권 등 침해행위 모니터링 등 의무 부여

□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상표법」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의무 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신설></u>	<u>1.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u>
<u><신설></u>	<u>2.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용의 일시적인 정지</u>
<u>③ (생략)</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 현행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¹⁾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등의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소관 기관인 특허청을 중심으로 단속 사무³⁾ 및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율적으로 또는 관련 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모니터링이나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⁴⁾.

1) 「상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함.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①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2)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청 소속 공무원은 상표권 등의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고 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위조상품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사무를 지원하고 있음.

4) 민관 공동협의체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감시 및 합동단속 등을 실시함.

□ 2014년에 출범, 정부·유관기관, 상표권자, 온라인사업자 등 96개 기관 및 기업으로 구성(2024년 7월 기준)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단속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판매 제재	전문 인력 단속	게시글 삭제	10,446	16,846	24,687	38,867	46,637
		사이트 폐쇄	394	451	355	301	470
	재택 모니터링(게시글 삭제)		126,542	171,606	181,131	198,853	225,841

※ 자료: 특허청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 보다 강화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표법」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상표법」에 따른

구분	참여 기관
정부 및 유관기관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브랜드지식재산권 보호협회, 유럽상공회의소 (10개 기관)
상표권자	LG전자, 삼성물산, CJ, 아모레퍼시픽, 코오롱인더스트리F&C(주), LG생활건강, 영원아웃도어 등(60개사)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번개장터,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 카카오, 헬로마켓, GS홈쇼핑, 롯데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롯데ON, 씨제이이엔엠, 이마트, 공영홈쇼핑, 현대홈쇼핑, 홈플러스, 중고나라, SSG.COM, 브랜드, 당근마켓 등(26개사)

□ 주요 활동

(단속협력) 특허청·상표권자·온라인사업자 보호원 등이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감시 및 합동단속 실시
(협력 모니터링) 상표권자,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확산 방지
(지재권보호 교육) 협의회 구성기업을 대상으로 유통빈발 위조상품·브랜드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위조상품 유통 방지 관련 교육

※ 자료: 특허청 보도자료(특허청,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 개최, 2024. 9. 26.)

①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②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용의 일시적인 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표권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대법원은 ①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③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⁵⁾.

5)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③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

-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⁶⁾이 발의되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표권 등의 침해행위는 「상표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사항으로, 침해행위자에 대한 규제와 별개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모니터링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부여가 필요하다면 법 체계상 상표권 등의 소관 법률인 「상표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특허청도 개정안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상표권 침해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표권자 보호에 관한 것이므로 「상표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의무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를 오픈마켓 운영자가 임의로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02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684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80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13호)

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행법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사항은 통신판매중개자 자신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위반이 없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행위에 대하여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연대 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⁸⁾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려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소비자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

8)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